

지구온난화관련 상정법안에 관한 의견 및 환경관련 준조세 현황 조사표

□ 작성된 조사표는 **2002년 4월 3일(수)까지 FAX나 E-mail 중 편리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환경안전RC팀 김영찬 팀장
문의전화 : 02-744-0116(203), Fax(02-743-1887), E-mail (yckim@kpia.or.kr)
- 전경련 환경경영팀 손훈정 선임조사역
문의전화 : 02-3771-0229 FAX (02-3771-0110), E-mail (beagle@fki.or.kr)

지구온난화관련 상정법안에 관한 의견 및 환경관련 준조세 현황 조사표

본 조사는 전경련 환경경영팀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환경관련 준조세 현황 파악 자료로 활용되며 귀사의 대외적 비밀은 보장됩니다.	회사명/부서	
	업종코드*기재	
	작성자 및 직위	
	연락처	TEL FAX E-mail

*업종코드 참조

D>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표준산업분류표 개정(2000. 1. 7) 기준

1. 귀사의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구 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매출액 ¹⁾	천원	천원	천원
당기순이익 ²⁾	천원	천원	천원

주 : 1) 매출액 지표가 없는 기업(예 : 금융관련기관)은 영업수입 등 매출액에 상당하는 수치 기재
 2) 당기순이익 지표가 없는 기업은 이에 상당하는 수치 기재

2. 귀사에 부과된 환경관련 준조세 금액에 대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부 과 항 목		1999년	2000년	2001년
(업무중)자동차배출가스 단속관련 과태료		천원	천원	천원
배출부과금	대 기	천원	천원	천원
	수 질	천원	천원	천원
환경개선 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폐기물 예치금		천원	천원	천원
폐기물 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수질개선 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폐기물 처리 위반에 대한 벌과금		천원	천원	천원
기타 (예 : 농작물 피해보상금 등)		▷부과사유 천원	▷부과사유 천원	▷부과사유 천원

3. 환경관련 준조세 부과 관련 애로사항 및 문제점

4. 지구온난화관련 상정법안에 대한 의견 (의견 해당란에 √표시, 구체적 사유 기재)

1.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자발적 협약 제도 도입	의견	찬성(), 반대(), 의견없음()
	이유	
2. 자발적 협약제도 도입시 체결의사 유·무	의견	찬성(), 반대(), 의견없음()
	이유	※ 체결의사 있을 경우 배출 억제목표 및 이행방법의 구체적 계획, 필요한 정부 지원내용 등 기재내용
3.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의견	찬성(), 반대(), 의견없음()
	이유	
4.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의견	찬성(), 반대(), 의견없음()
	이유	
5. 기업이 부담·납부한 부담금으로 지구온난화기금을 조성하는데 대한 의견	의견	찬성(), 반대(), 의견없음()
	이유	
6. 기금관련 기타 의견 (기금 사용방식 및 운용내역, 관리 주체 등)		
7. 기타 지구온난화 관련 상정법안에 대한 의견		

[별첨] 지구온난화관련 상정법안 주요내용

[별첨]

지구온난화관련 상정법안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이정일의원	이호응의원
자발적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 억제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도록 함 ○ 정부는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함 	案 제15조	案 제24조
배출 부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온실가스 저감비용부담금 또는 화석연료 사용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음 ○ 온실가스저감비용부담금 또는 화석연료 사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案 제16조	案 제21조 ②항 제1호 (※배출부과금 관련조항은 별도로 없음)
배출권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를 실시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함 	案 제18조	案 제26조
지구 온난화 방지대책 추진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과학적인 연구분석,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대책의 개발 및 관련기술의 개발·보급 등 지구온난화대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방지대책추진기금”을 설치 ○ 기금 재원조성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사업자로부터의 온실가스 저감비용부담금 또는 화석연료 사용부담금 -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案 제25조	案 제21조
기금사용 및 관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억제 등 지구온난화 방지시설 설치비지원 ○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방지에 관한 대책의 연구·개발비 지원 ○ 온실가스배출 저감기술 개발 및 보급 ○ 지구온난화의 영향평가 및 방지대책 개발비 지원 ○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국민교육 및 홍보비 지원 ○ 풍력, 조력,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한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연구·개발비 지원 ○ 그밖에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금의 관리·운영은 환경부장관이 관리 	案 제26조 및 제27조	案 제22조 및 제23조

지구온난화방지대책에관한법률안

(이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2
----------	------

발의연월일 : 2001. 12. 21.

발 의 자 : 이정일 · 김원길 · 박양수 · 김영진
정장선 · 강숙자 · 박인상 · 전갑길
박주선 · 천정배 · 송석찬 · 김부겸
강운태 · 장영달 · 조재환 · 정동채
김화중 · 김영배 · 이강래 · 김효석
의원(20인)

찬 성 자 : 1 인

제안이유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 의무부담 참여 압력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응분의 역할분담을 위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저감조치 추진 의지의 표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고, 현재 기후변화에관한유엔기본협약(UNFCCC) 및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저감 의무부담 대상국가가 아닌 일부 개도국이 의무부담 참여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크면서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부담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최근에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에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이러한 압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온실가스 저감 의무부담 참여 이전이라도,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현재 구축한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및 수립·시행중인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조치 추진의 실효성 제고 및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골자

- 가. 지구온난화방지 및 온실가스 배출억제·흡수 증진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6조).
- 나. 지구온난화방지 기본계획 및 그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 다. 정부는 3년 단위로 지구온난화방지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8조).
- 라. 지구온난화방지대책의 수립·조정·시행을 위한 지구온난화방지대책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 마.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흡수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억제 조치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2조).
- 바.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의 상시측정 및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13조).
- 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목표와 이행방법등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함(안 제15조).
- 아.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배출권의 거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온실가스 억제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함(안 제18조).
- 자. 지구온난화방지대책 실시에 필요한 법제·재정·행정상의 필요조치, 재정지원, 행정조직의 정비 등을 규정 함(안 제20조 내지 제22조).
- 차. 지구온난화방지대책에 대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의 증진을 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 카.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기술과 시설 등의 연구·개발·보급·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5조 및 제27조).

지구온난화방지대책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구온난화방지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구온난화방지대책 및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공영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온난화”라 함은 사업활동 그밖의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중에 축적되어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변화”라 함은 사업활동 그밖의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 대기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온 자연적인 기후 변동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3.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4. “온실가스배출”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중에 방출 또는 누출하는 것을 말한다.
5. “온실가스흡수”라 함은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과정·활동 또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

한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관측 및 감시를 행함과 동시에 지구 온난화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국민 의 온실가스 배출억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지구온난화방지대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사업자 또는 주민들이 하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흡수 증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대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그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대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구온난화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구온난화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3년마다 지구온난화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농도변화 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과 제도개선
4.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증진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촉진대책
5.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6.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교육·홍보대책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자원 조달방법
8.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지구온난화방지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온난화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구온난화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온난화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회보고) ①정부는 매년 지구온난화 방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상황
2. 다음연도의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의 내용
3. 그 밖에 지구온난화방지에 관한 주요사항

③정부는 기후변화에관한 유엔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의 협상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 종료후 2월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지구온난화방지대책위원회의 설치등

제9조(지구온난화방지대책위원회의 설치) ①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구온난화방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구온난화방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구온난화방지대책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방지대책 사업추진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에관한유엔기본협약에 의한 국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구온난화방지대책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구온난화방지대책실무기획단) ①지구온난화방지대책의 수립과 추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지구

온난화대책실무기획단(이하 “실무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실무기획단과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보고서 작성) ①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에관한유엔기본협약 제4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고서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사무국에 제출하기 1월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온실가스 배출억제 조치 실시 등

제13조(온실가스 농도 측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측정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물자원 및 수자원의 변화 상황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영향 조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①환경부장관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자발적 협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억제) ①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 억제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협약의 내용·체결절차·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온실가스 배출부과금 부과) 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온실가스 저감비용부담금 또는 화석연료 사용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다.

②온실가스저감비용부담금 또는 화석연료 사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온실가스 공동 저감사업 실시) ①정부는 국가간 온실가스 공동저감협력 사업을 실시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실가스 공동저감사업의 대상·사업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실시) ①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를 실시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대상자·항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승인·조정·평가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국가간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개발체제사업에의 내용, 승인, 조정, 평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개발체제사업을 할 경우에 그 실적을 온실 가스배출저감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과분석을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장 법제 및 제정상의 조치등

제20조(법제상의 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대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구온난화 방지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그밖에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조직의 정비 등) 정부는 지구온난화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의 정비 및 행정운영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구온난화방지 교육 및 홍보) 환경부장관은 지구온난화방지 및 온실가스 배출억제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협력의 증진)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구온난화방지에 관한 기술협력·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기금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지구온난화방지대책추진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과학적인 연구분석,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대책의 개발 및 관련기술의 개발·보급 등 지구온난화대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방지대책추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사업자로부터의 온실가스 저감비용부담금 또는 화석연료 사용부담금
2.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제2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지구온난화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2.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방지에 관한 대책의 연구·개발비 지원
3. 온실가스배출 저감기술 개발 및 보급
4. 지구온난화의 영향평가 및 방지대책 개발비 지원
5.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국민교육 및 홍보비 지원
6. 풍력, 조력,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한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연구·개발비 지원
7. 그밖에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환경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위탁하여 운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구온난화가스저감대책법안

(이호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9
----------	------

발의연월일 : 2001. 12. 27.

발 의 자 : 이호응 · 곽치영 · 권기술
권오을 · 김문수 · 김부겸
김용학 · 김원웅 · 김홍신
남경필 · 서상섭 · 손태인
손학규 · 신현대 · 안영근
오세훈 · 윤여준 · 이부영
이주영 · 이창복 · 조정무
정동영 · 정병국의원(23인)

제안이유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이 타결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크면서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의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온실가스 저감 의무부담 참여 이전이라도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추진 기반마련 등 교토의정서 이행준비,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 조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골자

- 가. 지구온난화방지 및 온실가스 배출억제·흡수 증진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
- 나. 지구온난화종합대책 및 그 시행에 관한 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정례화 함(안 제7조).
- 다. 3년 단위의 “지구온난화종합대책”의 수립·추진을 의무화 함(안 제8조).
- 라.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의 상시측정 및 그 결과 공고를 의무화 함(안 제10조).
- 마. 지구온난화종합대책의 수립·조정·시행을 위한 관계기구를 설치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지구온난화종합대책의 수립·시행 관련사항의 심의를 위한 지구온난화대책추진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 지구온난화대책실무기획단의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의 설치
- 바.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흡수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억제 조치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과 국회 보고를 규정함(안 제14조).
- 사. 지구온난화대책 실시에 필요한 법제·재정·행정상의 필요조치, 재정지원, 행정조직의 정비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 아. 지구온난화대책에 대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의 증진을 명시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자.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기술과 시설 등의 연구·개발·보급·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안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 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목표와 이행방법 등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및 제25조).
- 카.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배출권의 거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

지구온난화가스저감대책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엔의 기후변화기본협약에 입각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 인류공동의 과제로서 이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지구온난화방지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구온난화종합대책추진 및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온난화”라 함은 사업활동 혹은 기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변화”라 함은 사업활동 혹은 기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 대기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온 자연적인 기후 변동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3.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4. “온실가스배출”이라 함은 사업활동 혹은 기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 또는 누출하는 것을 말한다.
5. “온실가스흡수”라 함은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과정·활동 또는 체계를 말한다.
6. “지구온난화에의 적응대책”이라 함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환경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의도적)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관측 및 감시를 행함과 동시에 지구

온난화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국민 또는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배출억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지구온난화방지대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사업자 또는 주민들이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증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대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그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대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①정부는 매년 온실가스의 저감 및 배출억제를 위한 종합대책 및 그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년도의 지구온난화 대응 종합대책 추진상황
2. 다음 년도의 주요 지구온난화 대응시책의 내용
3. 기타 지구온난화에 관한 주요사항

③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의 협상결과와 대응대책을 마련하여 총회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지구온난화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8조(지구온난화종합대책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매3년마다 지구온난화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현황 및 전망
2.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 계별 대책과 제도개선
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증진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촉진 대책
6.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7.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교육·홍보대책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9. 기타 지구온난화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온난화대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적평가) ①환경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대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온난화방지실무기획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0조(온실가스 농도 측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의 상황을 상시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측정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물자원 및 수자원의 변화 상황과 인간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영향조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①환경부장관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3장 지구온난화대책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지구온난화대책추진위원회의 설치)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대책의 수립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구온난화대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자 등 2인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정한다.

1. 종합대책의 수립 및 그 시행의 조정

2.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외대책 수립 및 그 시행의 조정
 4. 지구온난화대책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의 조정
 5. 지구온난화로 인한 적응대책 수립 및 그 시행의 조정
 6.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에 의한 국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 대응 종합대책보고서
 8. 기타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이 법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구온난화대책실무기획단) 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하며,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지구온난화대책실무기획단”(이하 “실무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기획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내에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상근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기획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상근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은 환경부장관이 공무원 이외의 자 중에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과 기획능력이 풍부한 자로 임명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의 임무 및 신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보고서 작성) ①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제4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고서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사무국에 제출하기 1월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등

제16조(법제상의 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대책의 실시에도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지원 등)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구온난화 대책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구온난화 방지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기타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조직의 정비 등) 정부는 지구온난화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의 정비 및 행정운영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지구온난화방지 교육 및 홍보) 환경부장관은 지구온난화방지 및 온실가스 배출억제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협력의 증진)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구온난화방지에 관한 기술협력·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기금의 설치 및 운영

제21조(지구온난화대책추진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과학적인 연구분석,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대책의 개발 및 관련기술의 개발·보급 등 지구온난화대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대책추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사업자로부터의 온실가스 저감비용부담금(또는 화석연료 사용 부담금)
2.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의 출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기타 기금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제22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지구온난화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2.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관한 대책의 연구·개발비 지원
3. 온실가스배출 저감기술 개발 및 보급
4. 지구온난화의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개발비 지원
5.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국민교육 및 홍보비 지원
6. 해양, 풍력,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한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연구·개발비 지원
7. 기타 지구온난화대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환경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위탁하여 운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온실가스 배출억제 조치 실시 등

제24조(자발적 협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억제) ①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 억제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자발적협약의 내용·체결절차·이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온실가스 공동 저감사업 실시) 정부는 국가간 온실가스 공동저감협력사업을 실시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온실가스 공동저감사업의 대상·사업수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실시) ①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를 실시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대상자·항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승인·조정·평가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간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승인, 조정, 평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실적을 온실 가스배출저감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결과분석 및 평가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